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④

신청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 방안연구

조 용 혁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Act for Protection of  
subcontractor in Service Contract

연구자 : 조용혁(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Cho, Yong Hyuk

2013. 11. 30.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제도의 불명확성이 존재함
- 하도급법은 대상거래를 제조위탁과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으로 구분
  - “역무”는 엔지니어링활동과 화물의 운송·주선, 건축물의 유지·관리, 경비업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위탁사무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고시(「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역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서비스

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음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역무”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용역위탁”에 있어 “역무” 범위를 재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먼저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 민법과 하도급법이 하도급·도급과 하도급거래를 다루고 있는 방식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그 예외를 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함
-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을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적 목적 하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제조위탁 등 다른 도급유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역무위탁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화한 포괄주의는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조사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확대 또는 개편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을 조사
- 용역, 역무 또는 서비스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역무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과 주요 법령별 역무활동의 정의 및 범위, 주요 관련 제도 등을 조사·분석
- 국내 입법례는 용역과 역무, 서비스를 혼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법률적 의미에서 상하관계 또는 포섭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에서 굳이 구분하여 다룰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것임
  - 용역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통합적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정방안 연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을 분석함
-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중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역무의 범위에 관한 행정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분류명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역무간의 범위 불일치 사례 등 법제상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모색

- 이를 위하여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 관련법률 그리고 한국표준 산업분류 등을 비교분석하여, 용역 또는 역무의 범주별로 법 적용상의 문제점 또는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또한,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편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과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무” 범위의 재편 필요성을 분석
  - 아울러 “역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역무의 종류 및 범위를 분석하고, “역무” 범위의 재편에 따른 법규 개정안을 제안함

### Ⅲ. 기대효과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역무” 내지 “용역”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 규제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
- 특히, 유관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관련 법규의 개정 시 정책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음
  - 하도급법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
  -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함

▶▶ 주제어 : 하도급, 하도급거래, 용역, 역무, 서비스, 한국표준산업분류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t is necessary to make a fair subcontract transaction rule fo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between LE(Large Enterprise) and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win-win cooperation of LE and SME.

### Purpose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pplication scope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o analyze the existing laws about “service” and to finally suggest legislative policy approaches to improve the Act and its affiliated administrative rule

## II . Main Contents

###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and its affiliated administrative rule

- Aiming at application scope, I review the revision history of the Act and 「Notification about Scope of Service」 of FTC in chapter 2.

- Secondly, I analyze the application scope of current revision of the Act and the Notification.
- Thirdly, this study suggest an undertone for improvement of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 Current legislation status about “service”
  - In chapter 3, I check existing all acts and analysis 64 acts regulating “用役(yong-yeok)”, “役務(yeok-moo)” or “service”
  - Upon investigation,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用役(yong-yeok)”, “役務(yeok-moo)” and “service”
- Suggestion for improving application scope of “service” in the Act and its affiliated administrative rule
  - By cros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ACT, the Notification, quoted laws and KSIC(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 find discordances between them in chapter 4.
  - Considering a coordination between the ACT, the Notification, related laws and KSIC, I suggest the way to improving the Notification’s application scope.

### **III. Expected Effect**

-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improving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its affiliated administrative rule for protection of subcontractor in service contract.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ovide the legal framework fo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etter environment for subcontract transaction.

➤ Key Words : subcontract transaction, subcontracting, subcontractor, servic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7
제 2 절 연구의 내용 .....	18
제 2 장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21
제 1 절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변천 .....	21
제 2 절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	22
1. 하도급의 개념 .....	22
2.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거래 .....	25
3.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제한 .....	29
4.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함의 .....	36
제 3 장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	39
제 1 절 역무에 관한 입법례 .....	40
1. 역무를 용역의 부분으로 보는 입법례 .....	40
2. 역무를 용역과 유사·동일하게 보는 입법례 .....	42
3. 특정 행위양태 또는 유형을 역무로 정한 입법례 .....	44
4. 용어의 뜻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례 .....	46
제 2 절 용역에 관한 입법례 .....	48

1. 특정 행위양태 또는 유형을 용역으로 정한 입법례 .....	49
2.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 .....	53
3. 용역을 위임·도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입법례 .....	54
제 3 절 서비스에 관한 입법례 .....	59
1. 특정 행위양태를 서비스로 정한 입법례 .....	59
2. 기타 입법례 .....	77
제 4 절 소 결 .....	79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	85
제 1 절 역무 분류의 개선방안 .....	85
제 2 절 유관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방안 .....	85
1. 역무고시의 개정연혁 .....	85
2. 역무고시 제2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7
3. 역무고시 제3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8
제 3 절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 .....	102
1.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	102
2. 운수업 .....	108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4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31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7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46
제 4 절 소 결 .....	151

제 5 장 결 론 ..... 157

참 고 문 헌 ..... 161

## 표 목차

<표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분류 .....	32
<표 2>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 .....	92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및 중분류) .....	103
<표 4> 운수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	109
<표 5> 운수업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	110
<표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	116
<표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	116
<표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	132
<표 9>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	132
<표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	139
<표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	139
<표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	146
<표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	14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제도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하도급법은 대상거래를 제조위탁과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용역위탁은 다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으로 구분된다. 이때 “역무”는 엔지니어링활동과 화물의 운송·주선, 건축물의 유지·관리, 경비업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위탁사무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고시<sup>1)</sup>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역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용역위탁”에 있어 “역무” 범위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역무”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1)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39호, 2012.8.20.)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용역위탁”에 있어 “역무” 범위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현행 하도급법이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며,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하도급법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현실적인 수요를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 민법과 하도급법이 하도급·도급과 하도급거래를 다루고 있는 방식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그 예외를 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찾아본다.

다음으로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확대 또는 개편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을 조사한다. 용역, 역무 또는 서비스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역무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과 주요 법령별 역무활동의 정의 및 범위, 주요 관련 제도 등을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현행 역무의 범위에 관한 행정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분류명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역무 간의 범위 불일치 사례 등 법제상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모색한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39호, 이하 “역무고

시”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위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편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과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무” 범위의 재편 필요성을 분석한다. 아울러 “역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역무의 종류 및 범위를 분석하고, “역무” 범위의 재편에 따른 법규 개정안을 도출한다.

## 제 2 장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제 1 절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변천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5년 4월 1일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평화에 관한 법률」은 제조, 건설 및 수리위탁 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하던 것이 2005년 개정으로 동법의 적용범위에 용역위탁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2005년 이전의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형태 중 제조·수리·건설위탁 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용역위탁거래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용역위탁거래 중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는 제조하도급거래에 포함되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sup>2)</sup> 이러한 것을 하도급거래의 정의에 “용역위탁”을 추가하여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용역위탁을 포함시키고, 용역위탁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 서비스분야의 하도급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발의로 이루어진 2005년 하도급법 개정은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에 용역위탁거래를 추가함으로써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분야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산업의 지식정보화, 소프트웨어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고 서비스산업에서도 하도급 형태의 수직적·계층적 분업구조의 위탁거래가 증가하면서 용역분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거래상

---

2) 2005년 개정 이전의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업(業)으로 물품의 제조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사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 등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 제조·수리 또는 건설위탁으로 제한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용역위탁을 추가하고, 용역의 정의를 지식·정보성과물을 작성하거나 역무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부는 하도급법의 적용분야가 용역위탁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시정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하였다.<sup>3)</sup>

2005년 개정 하도급법은 용역위탁의 대상으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과 “역무(役務)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1항), 지식·정보성과물(제2조 제12항)과 역무(제2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추가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무고시가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역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는 2005년 제정된 이래로 2009년과 2011년 2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동 고시로서 정하고 있는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 제 2 절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 1. 하도급의 개념

#### 1) 도 급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3)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의안번호 170973)」

한편, 도급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과 계약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도급으로 본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점을 빼면, 「민법」에 따른 도급의 개념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1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조 제13호)”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제2조 제10호)”으로, 「전기공사업법」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조 제5호)”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정보통신)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조 제12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급과 유사개념으로 “수탁·위탁거래”를 정의하고 있다. 같은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수탁·위탁거래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

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로 기술하고 있다.

도급은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일은, 수급인의 노무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결과를 말하며, 이에는 유형적인 결과도 있고, 무형적인 결과도 있다.<sup>4)</sup>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의 계약이다.

## 2) 하도급

하도급은 일의 완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스스로 일을 완성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그 일을 완성하게 하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도급을 개념정의한 법률들을 보면, 하도급의 개념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3호)” 등으로 각각 하도급을 정의하고 있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때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되어도 일은 완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수급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하수급인을

4)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368면.

사용할 수 있다. 하수급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급인의 이행 보조자이다.<sup>5)</sup>

## 2.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거래

### 1) 하도급거래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하도급거래는 민법에 따른 도급 내지 하도급에 비하여 좁은 개념이다. 즉, 하도급법의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즉, 하도급법에 있어서 하도급거래란 제조·가공과 수리, 건설 그리고 용역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원도급(原都給)거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에도 적용된다. 즉,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

---

5) 김상용, 앞의 책, 387면.

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6)</sup>

이에 반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sup>7)</sup>, 「건설산업기본법」<sup>8)</sup>,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sup>9)</sup>, 「전기공사업법」<sup>10)</sup> 및 「정보통신공사업법」<sup>11)</sup> 등의 법률은 있어서 하도급은 원도급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 3) 제조위탁

“제조위탁”이란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또는 ④ 건설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항).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sup>12)</sup> 즉, 제조위탁은 물품제조·

6)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7)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제2조 제16호)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제2조 제12호)

9)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제2조 제11호)

10)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제2조 제6호)

11)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제2조 제13호)

12) 그 업에 따른 물품이란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②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③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④ 물품의

판매·수리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한 업종별 물품의 제조라는 사실행위를 타인(수급사업자)에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 4) 수리위탁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8항).

#### 5) 건설위탁

“건설위탁”이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9항). 이때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말한다.

---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⑤ 이들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을 말하며,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②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③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을 말한다.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38호)」

## 6) 용역위탁

“용역위탁”이란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이때 용역업자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직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식·정보성과물은 ① 정보프로그램<sup>13)</sup>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③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sup>14)</sup> 또는 ④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3항).

역무는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③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④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또는 ⑤ 기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14호).

현재 형식적인 하도급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제한되는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직무)의 공급과 관련된 것을 용역위탁으로 묶어서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달리, 일본의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이

---

1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14)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하 “下請法”이라 한다)은 그 적용대상을 제조위탁, 수리위탁, 정보성과  
물작성위탁<sup>15)</sup> 및 역무제공위탁<sup>16)</sup>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7)</sup>

### 3.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제한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인 적용범위는 하도급거래 일반이 아닌 일정한 하도급거래당사자  
또는 일정한 위탁 물품 또는 용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 1) 원사업자의 제한

하도급법에 따른 일방당사자인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sup>18)</sup> 이외의  
사업자” 또는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많은 중소기업자”<sup>19)</sup>인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에

---

15) 下請法 第2条 (定義) 3 この法律で「情報成果物作成委託」とは、事業者が業として行う提供若しくは業として請け負う作成の目的たる情報成果物の作成の行為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事業者に委託すること及び事業者がその使用する情報成果物の作成を業として行う場合にその情報成果物の作成の行為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事業者に委託することをいう。

16) 下請法 第2条 (定義) 4 この法律で「役務提供委託」とは、事業者が業として行う提供の目的たる役務の提供の行為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事業者に委託すること（建設業（建設業法（昭和24年法律第100号）第2条第2項に規定する建設業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営む者が業として請け負う建設工事（同条第1項に規定する建設工事をいう。）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建設業を営む者に請け負わせることを除く。）をいう。

17) 下請法 第2条 (定義) 5 この法律で「製造委託等」とは、製造委託, 修理委託, 情報成果物作成委託及び役務提供委託をいう。

1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19)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비하여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은 경우라도 연간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②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⑤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⑦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⑨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무면허 건설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2) 대상의 제한

하도급의 유형 중 제조위탁은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레미콘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적용된다.<sup>20)</sup>

또한, 건설위탁의 대상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0) 하도급법 제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경미한 공사와 ②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 제한된다.<sup>21)</sup>

---

21)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제7항

<표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분류

	하도급 내용	대상사업자	대상 물품 또는 용역
제 조 위 탁 ( 가 공 위 탁 포 함 )	<p>물품의 제조</p>	<p>물품의 제조·판매·수리 사업자</p>	<p>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건본품, 사용안내서등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염색, 봉제 등                      (임)가공</p>
수 리	<p>수리행위</p>	<p>건설 사업자</p>	<p>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벨브, 감문, 엘                      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p>
		<p>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p>	

	하도급 내용	대상사업자	대상 물품 또는 용역
위탁			
건설위탁	건설공사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기타 사업자	
용역위탁	용역수행행위	용역업자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기타
		엔지니어링활동(실계 제외)	
		용역업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대상 물품 또는 용역	
하도급 내용	대상사업자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p>도·소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p> <p>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p> <p>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p> <p>SW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p>
	<p>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p> <p>항만운항업자가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위탁하는 활동</p> <p>철도운송업자가 운송사업을 위탁하는 활동</p>
	<p>기타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활동)</p>
	<p>(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p>
	<p>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 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p>

	하도급 내용	대상사업자	대상 물품 또는 용역
			<p>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활동</p> <p>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활동</p>
		<p>경우 (정보프로 그램 제외)</p>	<p>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활동</p> <p>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위탁하는 활동</p> <p>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p>
		<p>광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게 위탁하는 경우</p>	<p>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p> <p>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p>

#### 4.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함의

하도급은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대기업이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는, 수급인인 대기업의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이 하수급인인 중소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함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지배하여 하수급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sup>22)</sup>

하도급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 하에서 하도급법은 그 적용범위가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원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규모가 큰 중소기업<sup>23)</sup>인 거래관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는 경우<sup>24)</sup> 또는 원사업자에 비하여 수급사업자가 규모가 큰 경우 등은 하도급법에 따른 규율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일의 완성을 위탁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하도급거래는 물론 도급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의 제명과 “하도급거래”라는 법률용어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적용대상에는 하도급거래와 도급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무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를 완성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은 다종다기할 것이지만, 제조·가공과 수리, 건설 그리고 용역을 위탁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현실에 있어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도급

22) 김상용, 앞의 책, 388면.

23) 원사업자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규모가 크더라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4) 이 경우 원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를 불문한다.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의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적 목적 하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제조위탁 등 다른 도급유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역무위탁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화한 포괄주의는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제 3 장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일”로, 역무는 “노역(勞役)을 하는 일”, 서비스는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입법례는 용역과 역무, 서비스를 혼용하고 있는 바,<sup>25)</sup> 이 장에서는 용역, 역무 및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령 현황과 주요 법령별 역무활동의 정의 및 범위, 주요 관련 제도 등을 조사·분석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하도급법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현실적인 수요를 출발점으로 한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하도급 형태의 위탁거래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역무·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현황과약도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정책당국의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용역 또는 역무 분야의 적용범위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용역·역무·서비스의 규율에 관한 법제 현황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25) 한편, 「우주손해배상법」은 역무가 노무를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역무와 노무를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제1항에 따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 제 1 절 역무에 관한 입법례

### 1. 역무를 용역의 부분으로 보는 입법례

#### 1) 부가가치세법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제11조).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제16조 및 제20조).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9. (생략)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생략)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생략)  
 ② (생략)

2) 하도급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은 용역위탁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과 역무(役務)의 공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① ~ ⑩ (생략)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 (생략)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설계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⑭ ~ ⑮ (생략)

## 2. 역무를 용역과 유사·동일하게 보는 입법례

### 1)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3호), “설계 등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중 일정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4호). 즉 건설기술관리법은 “역무의 수행”을 용역으로 보고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 15. (생략)

### 2) 건설산업기본법

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 15. (생략)

### 3)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하게 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 16. (생략)

### 3. 특정 행위양태 또는 유형을 역무로 정한 입법례

#### 1)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과 동일하게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고 있다(제2조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 10. (생략)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생략)

### 3)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용역의 하위개념으로 역무를 사용하면서, 다시 역무에 해당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① ~ ⑫ (생략)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설계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⑭ ~ ⑮ (생략)

#### 4. 용어의 뜻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례

##### 1) 우편법

우편법은 입법목적을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  
지함”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우편 역무’를 법률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2)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업무를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을 공인인증역무의 예시로 들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 13. (생략)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3호), 제50조의4는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이라는 제호 하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역무 제공의 거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정보 전송 역무의 제공 등”으로 보는 듯하다.<sup>26)</sup>

26) 동법 제50조의4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걸쳐서 “역무의 제공”을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함으로써 역무와 서비스를 혼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4조의2 제4항과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등도 “서비스 제공” 또는 “자신의 서비스”,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와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도 법문에 “해당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채용하고 있으나,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와 통신과금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 2 절 용역에 관한 입법례

역무를 용역의 일부분으로 보는 입법례는 제1절에서 살펴보았으나, 그 반대의 입법례는 찾을 수 없었고, 용역과 역무를 동일·유사하게 보는 입법례 또한 제1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이 절에서는 특정 행위 양태 또는 유형을 용역으로 정한 입법례와 달리 용어를 정의하지 아니하고 법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비스제공자(유무선전화결제사업자)에 관한 규제를 규정한 법문의 해석상 각각의 IDC서비스와 유무선전화결제서비스로 볼 것이다.

### 1. 특정 행위양태 또는 유형을 용역으로 정한 입법례

#### 1)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sup>27)</sup>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 (생략)
-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 4. ~ 8. (생략)
-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2)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관리용역업을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6. (생략)
-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27)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말한다.

8. (생략)

② (생략)

### 3) 말산업 육성법

말이용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생략)

### 4)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은 전시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제2조 제1호), 전시사업자를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전시시설사업자, 전시주최사업자, 전시장치사업자 및 전시용역사업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전시용역사업자”를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5호).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

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 4. (생략)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장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용역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생략)

### 5)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항만용역업이란 ①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와 ② 본선을 경비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p>제 2 조(정의) ① ~ ③ (생략)</p> <p>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생략)</p>
시행령	<p>제 2 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p> <p>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p> <p>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p> <p>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p> <p>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p> <p>2. ~ 4. (생략)</p>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을 제호로 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는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법은 “소방 기술용역”을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

대외무역법은 수출과 수입의 대상을 물품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로 나누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동법의 적용대상인 용역으로 ① 경영 상담업 ② 법무 관련 서비스업 ③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④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⑤ 디자인 ⑥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⑧ 운수업 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⑩ 기타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그리고 ⑪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열거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법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p> <p>가. 물품</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p> <p>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p> <p>2. ~ 3. (생략)</p>
시행령	<p>제 3 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p> <p>가. 경영 상담업</p> <p>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p>

	<p>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p> <p>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p> <p>마. 디자인</p> <p>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p> <p>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p> <p>아. 운수업</p> <p>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p> <p>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p> <p>카.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p> <p>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p>
--	----------------------------------------------------------------------------------------------------------------------------------------------------------------------------------------------------------------------------------------------------------------------------------------------------------------------------------------------------------------------------------------------------------------------------------------------------------------------------------

### 3. 용역을 위임·도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입법례

「국제사법」은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6조 제2항), 동 규정은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을 용역제공계약의 일종으로 봄으로써 용역의 개념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 (생략)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 2. (생략)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 (생략)

#### 4. 용어의 뜻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례

“역무”의 경우 용어 정의의 유무를 떠나서 입법례가 많지 않지만, “용역”은 상당수의 법률에서 재화 또는 상품, 물품, 물자, 제품, 재산 등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대상을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시설물 포함)으로 적시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사업자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제2조 제6호),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방문판매란 판매업자<sup>28)</sup>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sup>29)</sup>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표시는 사업자·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일정 사항<sup>30)</sup>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5)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

28)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9)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과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sup>31)</sup>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13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9호).

####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미디어랩(Media Representative)을 규율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광고주를 '유형·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0호).

####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5호).

#### 8)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9) 산업표준화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한국산업표준 준수

---

31)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무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4조).

####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법인(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또는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 11) 관광진흥법

관광산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12)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을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13) 곤충산업법

곤충산업을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 1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을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판매·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3년 8월 13일 제정되어 2014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아직 동법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 제 3 절 서비스에 관한 입법례

서비스를 역무 또는 용역의 일부로 규정한 입법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sup>32)</sup> 등 많은 수의 법령이 별도의 용어의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역무 또는 용역의 의미로 법령에서 “서비스”를 법문에 사용하고 있다.

#### 1. 특정 행위양태를 서비스로 정한 입법례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1호), 건축서비스 사업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제2조 제3호), 건축서비스 사업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32)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 6. (생략)
- ② (생략)

## 2)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 보호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생략)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의 조사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

도의 평가·점검 등의 기준이 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이의 중요 요소로서 공공서비스를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서비스는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방송통신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보건의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 6. (생략)

6)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4호).

### 7)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회복지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보건의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제7호).

###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칭하여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sup>33)</sup>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3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로 제한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서비스”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법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li> <li>4. ~ 5. (생략)</li> </ol>
시행령	<p>제 3 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 서비스</li> <li>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li> <li>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li> <li>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li> <li>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li> <li>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li> <li>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li> <li>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li> </ol>

10)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지식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8조 제2항).<sup>34)</sup>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는 34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	<p>제 8 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p> <p>③ (생략)</p>																
시행령	<p>제 3 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p> <p>②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해당업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th> </tr> </thead> <tbody> <tr> <td>○ 환경 정화 및 복원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39</td> </tr> <tr> <td>○ 도매 및 상품중개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46</td> </tr> <tr> <td>○ 전자상거래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47911</td> </tr> <tr> <td>○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581</td> </tr> <tr> <td>○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582</td> </tr> <tr> <td>○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5911</td> </tr> </tbody> </table>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 전자상거래업	4791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 전자상거래업	4791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산업발전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2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sup>35)</sup>.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 12. (생략)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35) 다만, ① 인터넷신문과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한다.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3)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호).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정의하고(제2조 제18호)<sup>36)</sup>,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 21. (생략)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36) 다만, ① 인터넷신문과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한다.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호).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기반서비스(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생략)

#### 1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및 기타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 18) 유통산업발전법

도매배송서비스를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1호).

####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 21)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①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및 ②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0호).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 29. (생략)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 36. (생략)

## 2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대행 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자를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제22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업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자본금·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대행 사업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업자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4.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계를 활용한 사업
5.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6.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보급 및 이를 활용한 사업
7. 그 밖에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략)

###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호스팅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 24)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5호).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으로, 통신과금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와 ②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①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 9. (생략)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생략)

## 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라는 제호 하에 전자상거래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 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 27)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 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용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의2 제9호).

2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1호).

29)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콘텐츠제공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30)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회원제정보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0호).

3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열거하고, 이를 “가족지원서비스”로 지칭하고 있다.

법	<p>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li> <li>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li> <li>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li> <li>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li> </ol>
---	------------------------------------------------------------------------------------------------------------------------------------------------------------------------------------------------------------------------------------------------------

	<p>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p>
시행령	<p>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를 말한다.</p>

### 32) 항공법

「항공법」 제2조 제41호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를 “항공교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 2. 기타 입법례

### 1)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를 역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를 정의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역무<sup>37)</sup>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전기통신서비스로 지칭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세부 개별서비스인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기간통신역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37)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생략)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 13. (생략)

##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②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4호).

## 3) 상표법

「상표법」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

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복지서비스시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4호).

## 제 4 절 소 결

입법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용역과 직무 그리고 서비스는 법적 개념으로서 상하관계 또는 포섭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에서 굳이 구분하여 다를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8)</sup> 따라서 용역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통합적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sup>39)</sup>

이러한 관점에서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의 개정안은 제4장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직무고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제2장과 제3장을 통하여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는 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제 2 조(정의) ① ~ ⑩ (생략)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직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제 2 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용역”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

38) 일본 하청법 참조

39) 한편, 용역과 직무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되는 설계”과 “설계를 제외한 엔지니어링활동”을 나누어서 각각 지식·정보성과물과 직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도 의미가 없어진다.

현 행	개정안
<p>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의 작성활동</li> <li>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활동</li> <li>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활동(「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포함한다)</li> <li>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li> <li>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li> <li>6.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li> </ol>

현 행	개정안
<p>⑫ 이 법에서 “지식·정보성과 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li> <li>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li> <li>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 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li> <li>8.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li> </ol> <p>&lt;개정 201 . . . &gt;</p> <p>⑫ 삭제 &lt;201 . . . &gt;</p>

제 3 장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현 행	개정안
<p>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p>	
<p>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p> <p>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p> <p>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p> <p>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p> <p>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 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p>	<p>⑬ 삭제 &lt;201 . . . &gt;</p>

현 행	개정안
<p>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p> <p>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p>	

##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 제 1 절 역무 분류의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역무고시를 중심으로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용역과 역무 그리고 서비스는 법적 개념으로서 상하관계 또는 포섭관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을 넘어서 용역위탁의 범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역무 내지 용역의 범위는 역무고시와 하도급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져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무고시만을 제도개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도급법과 역무고시를 통합적으로 분석 및 개선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유관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검토한 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방안은 순차적·누적적으로 제시하면서 제4절 소결에서 완결된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 제 2 절 유관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방안

#### 1. 역무고시의 개정연혁

역무고시는 2005년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서비스업이 포함됨과 함께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3호, 2005.7.6.)로 제정되었고, 2009년과 2011년 2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동 고시로서 정하고 있는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개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동 고시의 첫 번째 개정인 2009년 개정은 2009년 4월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이하 “훈

령예규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훈령예규규정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발령 후 1개월이 지난 날”로 규정하여 2009년 5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부칙 제2조에서 기존 훈령·예규 등<sup>40)</sup>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부칙 제2조 제2항 후단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 내에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제정된 역무고시는 2009년 8월 24일까지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야 하는 훈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부분개정이 2009년 8월 20일 이루어지게 되었다.

훈령예규규정 제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무고시는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의 위임에 따라 발령된 고시이므로 존속기한 대신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1차 개정을 통하여 재검토키한을 2012년 8월 20일로 설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훈령예규규정 제7조 제3항은 설정된 재검토키한이 만료되기 전에 훈령·예규등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키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하거나 재검토키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차 개정에 따른 역무고시의 재검토키한이 2012년 8월 20일로 도래함에 따라서, 재검토키한을 2015년 8월 20일까지로 재설정하는 2차 개정이 2012년 8월 20일 이루어졌다.

즉, 두 차례의 개정은 단지 훈령예규규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재검토키의 도래에 따라 재검토키한을 설정 또는 변경함에 그쳤을 뿐이며, 규범의 실제적인 변화는 찾을 수 없다.

40) 훈령·예규·고시를 말하며, 이때 훈령·예규·고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한다(훈령예규규정 제2조 제1항).

## 2. 역무고시 제2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역무고시 제2호의 문제점

역무고시 제2호는 운송 관련 역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를 수급사업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역무위탁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 |                                                                                                                                                                                                                                                                                                                                                               |
|---------------------------------------------------------------------------------------------------------------------------------------------------------------------------------------------------------------------------------------------------------------------------------------------------------------------------------------------------------------|
| <p>2.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p> <p>나.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위탁하는 활동</p> <p>다.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위탁하는 활동</p> |
|---------------------------------------------------------------------------------------------------------------------------------------------------------------------------------------------------------------------------------------------------------------------------------------------------------------------------------------------------------------|

그런데, 역무고시 제2호는 2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폐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준거법령을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규의 적용대상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당사자를 부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유관법령과의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다.

첫째, 적시된 관련 법령의 개폐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역무고시 제2호 가목은 역무위탁의 대상의 하나로서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제2호 가목은 관련 근거법령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적시하고 있으나,<sup>41)</sup> 동법은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sup>42)</sup>

또한, 제2호 가목은 주체로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를 적시하고, 역무위탁 대상 활동으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과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의 주선”을 명시하고 있다. 폐지된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역무고시 제2호 가목은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이에 따르면 제2호 가목에 따른 역무위탁의 대상은 물류사업자의 물류사업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전부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41)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는 물류와 물류사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2.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략)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 13. (생략)

42) 반면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법」은 반영되어 있다.

43) 제2호 가목의 “제2조제1호”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둘째, 역무위탁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해당하는 자들이 부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2호 본문에서 운수사업자의 예로 적시된 “철도소운송업자(鐵道小運送業者)”는 1962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1월 1일 폐지된 「철도소운송업법(鐵道小運送業法)」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현행 법체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한다.<sup>44)</sup> 「철도소운송업법(鐵道小運送業法)」은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705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철도소운송업법」의 폐지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국가가 아닌 공사에서 철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국가운영을 전제로 한 관련 법률은 폐지할 필요’가 있고, ‘공사가 직접 또는 제3자와 계약에 의해 철도소운송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다.<sup>45)</sup> 역무고시가 2005년 7월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2005년 1월 1일 폐지된 법에 근거한 철도소운송업자를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sup>46)</sup>

또한, 제2호 본문은 “항만운항업자”를 운수사업자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으며, 제2호 나목은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제2조 제1항)과 항만운송사업(제2조 제2항), 항만운송사업자(제23조)를 정의하고 있고, 법문에서

44) 폐지된 「철도소운송업법」에 따르면 철도소운송업자란 자본금, 시설·장비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철도청장에게 철도소운송업의 등록된 자를 말하며, 철도소운송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철도·궤도를 이용하는 물품운송을 알선하거나 그 운송물품을 인도받는 행위 ② 철도·궤도를 이용하는 운송물품을 모으거나 배달하는 행위 ③ 철도·궤도를 이용하는 물품운송행위 및 ④ 철도·궤도를 이용하는 운송물품을 철도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45) 이원탁, 한국철도공사법안(이호웅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3.6, 15~16면.

46) 이러한 입법 상의 오류는 조달청훈령인 「조달물자물류관리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계약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 지침 제6조는 “철도소운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으로 ‘철도소운송법에 의한 철도소운송업의 등록이 된 자’를 요구하고 있다. 동 지침의 최근 개정이 2012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박운항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항만운항업자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현행 법령에서 뿐만 아니라 연혁 전체를 통틀어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동법의 폐지와 함께 현행 법률체계에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이에 대체하여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마지막으로 제2호 다목의 “철도운송업자”도 현행 법체계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철도사업법」 제2조 제6호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철도차량<sup>47)</sup>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철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적절하지 못한 준거법령이 인용되고 있다. 제2조 다목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sup>48)</sup>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위탁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다른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다른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는 철도여객사업과 화물운송사업, 연계운송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철도여객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은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철도사업의

47) 철도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선로를 운행하여 운송에 활용되는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등은 철도차량으로 정의된다.

48)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범주에 속하며,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행하는 “(화물)운송의 영업”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화물)운송의 “주선 영업”이 복합된 형태의 역무로 볼 것이다.

## 2) 역무고시 제2호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문제점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역무고시 제2호의 개정방안들을 제안한다.

### (1) 제1안

역무고시 제2호가 규율하고자 하는바는 운수업과 관련된 하도급행위를 규율 대상에 포섭함에 있다고 본다면,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법에 기반하여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적절한 관련 근거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고시 제2호의 첫 번째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은 조문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물류사업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의 물류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그 업으로 행하는 물류활동 또는 수출입화물의 물류 주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류”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은 물론이거니와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포함하며,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은 물론 물류시설 운영업과 화물운송의 주선 등의 물류서비스업을 포괄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49)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에

4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따르면, 현행 역무고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에 관련 제반활동’과 ‘화물운송의 주선’, ‘항만운송과 항만용역업’, ‘철도사업’ 등을 포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여객운송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선업무의 대상은 물건운성의 주선임에 반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 내용은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것이다. 즉, 화물운송의 주선은 물론 물류시설운영업 또는 물류장비의 임대 등에 대한 주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물류사업에 범주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따로이 정해줄 필요가 있다.

<표 2>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3. ~ 14. (생략)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u>항공화물운송업</u>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u>창고업</u>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서비스업	<u>화물취급업</u> (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u>화물주선업</u>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u>항만용역업</u> ,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u>항만운송사업</u>	항만하역사업 <sup>50)</sup> , 검수사업 <sup>51)</sup> , 감정사업 <sup>52)</sup> , 검량사업 <sup>53)</sup>

50)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①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 ②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 ③ ①과 ②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④~⑬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 ④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 ⑤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艇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지정구간(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과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등은 제외한다.
- ⑥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에 들여놓는 행위
- ⑦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 ⑧ 항만에서 ⑥ 또는 ⑦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 ⑨ 항만에서 ⑥ 또는 ⑦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 ⑩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 ⑪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 ⑫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 ⑬ 항만에서 ⑪ 또는 ⑫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51)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52)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을 말한다.

53)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 (2) 제2안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을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원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원사업자의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제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무고시 제2호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인 원사업자를 특정하고, 당해 원사업자가 업으로 행하는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역무고시 제2호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문을 고려할 수 있다.

2. 운송사업자(「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및 운송주선사업자(「상법」 제114조의 물건운송 주선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업으로 행하는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법」 제125조는 운송인을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2안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은 물론 여객운송을 포함한다. 다만, “육상 또는 호천, 항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철도운송은 포함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게 된다. 한편, 「상법」 제114조가 정하고 있는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물건운송이 육상운송 또는 철도운송, 항만운송,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지만, 여객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수출입화물의 물류 주선도 포함되지 않는다.

(3) 제3안

세 번째 개선방안은 운송 관련된 적용대상자를 외연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이다. 즉, 육상·항만·항공운송과 관련된 업을 행하는 자를 전부 열거하여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문구성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운송 관련하여 위탁대상인 역무를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의 입법방식과의 균형을 고려하는 안이다. 즉,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을 위탁하는 활동”으로 기술함으로써, ①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른 ② 특정 원사업자가 ③ 당해 사업자의 업(業)에 따른 활동을 위탁하는 활동으로 개념 짓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와 형식을 같이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 각 목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을 위탁하는 활동<sup>54)</sup>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을 위탁하는 활동
-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철도차량을 사용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활동
-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가 항만운송을 위탁하는 활동
- 마.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항만용역업을 위탁하는 활동
- 바. 「항공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사용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활동

사.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동법 제139조에 따라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신고를 한자를 말한다)가 항공기를 이용한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의 대리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위에서 제안한 조문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육상여객운송은 제외되며, 「항공법」 제2조 제31호의 “항공운송사업”은 화물운송은 물론 여객운송을 포함하지만 항공화물운송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포함하는 「해운법」과 달리 「항만운송사업법」은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상여객운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육상(자동차·철도) 및 항만, 항공에 의한 화물운송과 화물운송주선 등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제4안

각각의 원사업자를 규율하는 근거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이 되는 의무 또는 원사업자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의무고시 제1호55)와 제5호56), 제6호57)는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무를 열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안을 고려할 수 있다.

- 
- 54) 법 제2조 제13항 제2호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의무고시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각종 물류관련 의무를 일람하기 위하여 편의상 명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 55)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 56)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활동
    -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위탁하는 활동
    -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
  - 57) 6.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업으로 행하는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물운송사업

나.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sup>58)</sup>

다. 철도사업

라. 항공운송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따른 역무의 주선사업

한편, 원사업자를 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문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 업으로 행하는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물운송사업자

나.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다. 철도사업자

라. 항공운송사업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자가 그 업을 행하는 역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 3. 역무고시 제3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역무고시 제3호의 문제점

역무고시 제3호는 건축물의 분양업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다른 사업자’를 수

<sup>58)</sup>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역무고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급사업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예시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적시하고 있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첫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서 부동산공급에 관한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예시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한편,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분양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따른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물 공사의 시공자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역무고시 제3호의 건축물의 분양 역무위탁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둘째, 건축물을 건축하여 당해 건축물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령으로서 2007년 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생략)
5. “공급”이란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 7. (생략)

동법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는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며,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sup>59)</sup>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역무고시 제3호를 통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역무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

5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 4. (생략)

이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를 역무위탁의 원사업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역무고시 제3호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문제점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역무고시 제3호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먼저 현행 역무고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주”는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일 뿐 이를 충족시키는 조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다음으로 건축주로서 부동산공급을 하는 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분양사업자와 유사하므로 이를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현행 역무고시 제3호가 규율하고자 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sup>60)</sup> 부동산개발업자의 공급업무의 위탁을 포함하도록 한다.

각각의 개정안은 법률상의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가 정하고 있는 입법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문의 기술방식의 차이에 따른 세 가지 안을 제안해 본다.

### (1) 제1안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의 동조 제2호의 분양 업무 위탁행위 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6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제1항을 업무수탁자에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개발업은 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의 동조 제5호의 공급  
업무 위탁행위

(2) 제2안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 또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부동  
산개발업자가 분양업무 또는 공급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3) 제3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  
탁하는 행위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가 동  
법 제2조 제2호의 분양 업무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가 동법 제2조 제5호의 공급 업무

### 제 3 절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

#### 1.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음의 A~U의 분류로 대분류된다. 각각은 다시  
두 자리 숫자(01~99)로 표기되는 중분류로 나뉘며, 이들 중분류의 하  
위구분단계는 다섯 자리 숫자까지 이어진다.<sup>61)</sup>

61) 예를 들어, 탁주제조업은 제조업의 갈래로서 “C 제조업 → 11 음료제조업 →

이절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역무의 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및 중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및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B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 1111 발효주 제조업 →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의 체계를 가지고 분류된다.

<b>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및 중분류)</b>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b>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b>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사업
<b>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b>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b>F 건설업</b>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b>G 도매 및 판매업</b>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b>H 운수업</b>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및 중분류)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및 중분류)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2) 정합성 제고방안 분석대상으로서의 산업군

“역무”의 범위의 개선이라는 연구의 목적범위 내에서 분석대상을 제한적으로 선별하기로 한다.

첫째, 포괄적으로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의 내용으로

① 물품의 제조와 ② 수리 ③ 건설 ④ 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제조(가공)위탁에 대응하는 산업군인 “C 제조업 (10~33)”과 건설위탁에 대응하는 산업군인 “F 건설업 (41~42)”, 그리고 용역위탁의 대상의 일종으로 분류된 “도·소매업자의 물품 판매”에 대응하는 “G 도매 및 판매업 (45~47)”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분류 수준에서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거나 관련성이 낮은 산업군은 분석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과 “B 광업 (05~08)”,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36)”,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K 금융 및 보험업 (64~6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 교육서비스업 (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 (99)”는 역무 내지 용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sup>62)</sup>

셋째, 현행 하도급법의 체계에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한 산업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역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현재 하도급법의 체계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아니한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39)”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의 경우 “94. 협회 및 단체”와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분류로 하는데, “94. 협회 및 단체”는 관련성이 낮은 산업군이라 할 수 있으며, “95. 수리업”은 수리위탁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산업군으로 볼 수 있고,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이용·미용업 등 논의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62) 이들 산업군을 향후 용역 또는 역무로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기로 한다.

않다고 할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분석대상은 “H 운수업 (49~52)”와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 2. 운수업

### 1) 운수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운수업을 (육상·파이프라인·수상·항공)운송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있다. 즉, 운수업(H)의 중분류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과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으로 세분되는데, 역무의 범위와의 관계는 소분류단계에서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운수업(H)의 소분류는 철도운송업(491)과 육상여객운송업(492), 도로화물운송업(493), 소화물전문운송업(494), 파이프라인운송업(495), 해상운송업(501),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502), 정기항공운송업(511), 부정기항공운송업(512), 보관 및 창고업(52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로 나뉜다.

### 2) 하도급법의 운수업 관련 규정

한편, 하도급법은 운수업과 관련하여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로화물운송업”과 “화물운송 중개”<sup>63)</sup>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 및 주선<sup>63)</sup>만을 역무에 포함

---

63) 하도급법은 화물운송과 “주선”을 규정하고 있고, “주선”과 “중개”는 법률적으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법률적 의미의 “주선”을 대신하여 이를 “중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여객/화물)운송과 항공(여객/화물)운송, 파이프라인운송, 철도운송은 물론이거니와 도로여객운송<sup>64)</sup>도 제외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sup>65)</sup>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역무고시 제2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수업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역무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물류사업자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 항만운항업자가 ‘항만운송’ 및 ‘항만용역업’을 위탁하는 활동이다. 세 번째는 철도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위탁하는 활동이다.<sup>66)</sup>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를 종합하여 보면, 운수업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이 규율하고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sup>67)</sup>

<표 4> 운수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1. 화물운송 : 철도화물운송, 도로화물운송, 해상·내륙화물운송, 항공화물운송
---------------------------------------------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포함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6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66) 현행 역무고시의 법문과의 차이점과 그 이유 등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2. “역무고시 제2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조하기 바란다.

67)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과 화물운송 등의 물류서비스업을 포함하므로, 역무고시 제2호 가목은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즉,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역무고시 제2호 가목의 화물운송업에 포함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역무고시 제2호 다목의 물류서비스업에 포함된다.

2. 철도여객운송<sup>68)</sup>
3. 화물운송 주선(중개)<sup>69)</sup>
4. 수출입화물의 물류<sup>70)</sup> 주선
5. 보관 및 창고업
6.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해상터미널 운영업
7. 항만운송업<sup>71)</sup>
8. 항만용역업<sup>72)</sup>
9. 기타 : 화물포장, 화물하역,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

### 3)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교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운수업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8) 역무고시 제2호 다목의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위탁하는 활동’ 중에서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의 경우에는 역무고시 제2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철도차량을 이용한 여객운송의 경우에만 의미를 가진다.

69) 「상법」이 정하고 있는 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주선에 한정된다(「상법」 제114조).

70)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71)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을 말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72) ①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와 ②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491. 철도운송업	철도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고시 I.1.다.
492. 육상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493. 도로 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법 §2 ⑬ 제2호
494. 소화물 전용운송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고시 I.1.가.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물류정책기본법	-
50. 수상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해운법, 물류정책기본법	고시 I.1.가.
502.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의 항만운송(여객 제외), 물류정책기본법	고시 I.1.가. 고시 I.1.나.
51. 항공 운송업		
511. 정기항공운송업	항공법, 물류정책기본법 (여객 제외)	고시 I.1.가.
512. 부정기항공운송업	항공법, 물류정책기본법 (여객 제외)	고시 I.1.가.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sup>73)</sup>		
521. 보관 및 창고업	물류정책기본법	고시 I.1.가.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정책기본법	고시 I.1.가.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법 §2 ⑬ 제2호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이 포섭하는 범위<sup>74)</sup>로 말미암을 것이지만, 현재 하도급법(법률)은 육상화물운송과 육상화물운송주선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역무고시(행정규칙)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대단히 넓힘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운수업 분야를 대부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역무고시를 통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역무의 범위는 하도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운수업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

이에 운수업 관련 개정사항을 역무고시 개정방안과 하도급법 개정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역무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객운송 분야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이다. 현행 하도급법 체계는 여객운송의 경우 철도여객운송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육상·해상·항공을 이용한 여객운송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합의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경제현실에 있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의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화물운수 분야에 있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입법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

---

73) 역무고시 I.2.나.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은 산업분류 상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Freight Transport Brokerage, Agency and Other Supporting Transport Services)” 또는 “5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All Other Supporting Transport Services n.e.c.)”로 보아야 할 것이다.

74) <표 2>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 참조.

이다. 즉, 운수업 분야의 하도급거래 규제 대상에서 여객운송은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철도여객운송을 포함하고 있는데, 철도에 있어서만 특히 여객운송의 하도급거래질서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의 물류사업
  -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국제물류주선업
  - 다. 「철도사업법」 제2조 제6호의 철도사업

둘째,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경우에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과 역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기초로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제 2 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 ⑩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의 작성활동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활동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

함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활동(「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의 물류사업
- 5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국제물류주선업
- 5의3. 「철도사업법」 제2조 제6호의 철도사업
6.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7.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8.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개정 201 . . . >

⑫ 삭제 <201 . . . >

⑬ 삭제 <201 . . . >

###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은 “출판업(58)”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으로 세분된다.

## 2) 하도급법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관련 규정

한편, 하도급법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정보프로그램의 작성”과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견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3호의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을 출판업(58)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전문디자인업(732)”과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 등과의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592)”만을 규정하고 있고, “출판업(58)”은 포섭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무고시는 제4호와 제6호를 통하여 두 가지 유형의 역무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가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 방송·방송영상제작업자 또는 영화제작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을 위탁하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무고시 제6호는 방송·방송영상제작 및 영화제작과 함께 공연기획을 함께 열거하고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공연기획”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이 아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산업군에 속하는 공연기획업(90191)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를 종합하여 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이 규율하고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1. 정보프로그램의 작성
2.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3.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무
4.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
5. (방송·방송영상제작업자, 영화제작업자)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

3)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교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인쇄문화산업 발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 §2 ⑫ 제1호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 §2 ⑫ 제2호 고시 I.6. (공연기획 제외)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 §2 ⑫ 제2호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고시 I.6.
602. 텔레비전 방송업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고시 I.6.
61. 통신업		
611. 우편업	우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
612. 전기통신업	전기통신사업법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법	법 §2 ⑫ 제1호 고시 I.4.가.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법	법 §2 ⑫ 제1호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법	고시 I.4.가.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시 I.4.나.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 라인정보 제공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시 I.4.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을 비교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중에서 인쇄출판업(58)과 통신업(61)은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과 “정보서비스업(63)”의 일부가 제외됨을 알 수 있다.

####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의 분석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관련한 분석은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1호와 역무고시 제4호, 그리고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2호와 역무고시 제6호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 ①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1호(정보프로그램)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1호는 정보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법문의 기술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짐작컨대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②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정보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정보프로그램에 속하는 대상을 직접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폐지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었다.<sup>75)</sup>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1호와는 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고, ②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이라는 표현 대신에 ‘표현된 창작물’에서만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li> <li>•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u>장치에 내재된</u></li> <li>•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u>조합된 것</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li> <li>•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u>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u></li> <li>• <u>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u></li> <li>•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u>표현된 창작물</u></li> </ul>

즉, 하도급법의 입법태도는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7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9년 「저작권법」으로 흡수되었으며,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두 개의 법률이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는 대상을 모두 포섭하기 위해서 방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을 구분하고, 각각 ‘컴퓨터용의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후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정보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창출할 필요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지식·정보성과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② 역무고시 제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표 6>에서 열거하고 있는 5가지 중에서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정보프로그램의 작성”은 물론 역무고시 제4호 가목의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과 제4호 나목의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정의는 대상사업의 식별기준으로서 명확성이 부족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각종 형사규제 및 행정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역무고시 제4호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를 각 목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를 역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와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다음으로 역무고시 제4호 가목은 수범주체를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무고시 제4호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당연히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역무고시 제4호 가목의 수범주체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역무고시 제4호 나목은 수범주체를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를 제작하고 검색하는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무고시 제4호 나목의 수범주체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검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역무고시 제4호의 역무위탁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경우와 ② 데이터베이스(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의 제작 및 제공·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검색하는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76)</sup>

③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2호(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 단계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의 세세분류로서 “일반 영화·비디오물 제작업(59111)”을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는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을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애니메이션 영화·비디오물 제작업(59112)과 광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업(59113) 등의 세세분류를 나누고 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2호는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예시로서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을 적시하고 있는데, ‘영화의 작성’은 일반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영화의 제작업(59111~591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의 작성’은 “방송 프로그

---

76) 역무고시 제4호 단서는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1호의 정보프로그램을 역무고시 제4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역무고시 제4호에서 정하는 역무의 내용이 하도급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중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는데, 역무고시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과는 차별화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램 제작업(59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에 속하는 것으로는 일반 비디오물 및 애니메이션 비디오물, 광고 비디오물의 제작업(59111~59113)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행사용비디오 촬영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의 속하는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73301)”으로 분류하고, 이에는 비디오촬영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게임물<sup>77)</sup>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판단해 보면,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2호에서 지칭하는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영화<sup>78)</sup> 및 같은 법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sup>79)</sup> 그리고 「방송법」 제2조 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sup>80)</sup>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sup>81)</sup>

77)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① 사행성게임물과 ②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③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78)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79)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80) 방송편성(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81) 다만,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및 제12항 제2호에 따르면, 지식·정보성과물의 일

④ 역무고시 제6호

역무고시 제6호의 수범대상인 사업자는 방송·방송영상제작업자와 영화제작업자, 공연기획업자의 세 종류이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공연기획”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산업군에 속하는 공연기획업(90191)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과 관련되는 것은 방송·방송영상제작업자와 영화제작업자로 제한된다.<sup>82)</sup> 영화제작업자는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및 제12항 제2호에 따른 ‘영화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역무고시 제6호에서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방송·방송영상제작업자에 한정된다.

‘방송·방송영상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방송제작 사업자와 방송영상제작 사업자’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시청자)<sup>83)</sup>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청자에게 송신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기획·편성·제작의 대상인 지식·정보성과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방송 그 자체는 제작의 대상인 지식·정보성과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현행법이 “방송제작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과 방송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방송·방송영상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방송 사업자와 방송영상제작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일본의 경우

---

중인 영화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영화의 작성)에 따른 용역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용역위탁에 해당할 것인데, 영화제작업자가 자기목적성을 가지고 영화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수행행위로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산업군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공연기획업자도 함께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공연기획업(90191)을 ‘공연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관련 법령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한 법리적 분석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83)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한다.

「정보성과물을 업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정보성과물의 제작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일례로서 ‘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TV프로그램의 제작을 프로그램 제작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들고 있다고 한다.<sup>84)</sup>

먼저, 방송사업자란 방송사업<sup>85)</sup>을 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sup>86)</sup> 즉, 방송사업자는 허가·승인·등록 등을 거친 후에 기획·편성·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시청자에게 송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역무고시 제6호의 방송 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sup>87)</sup>

다음으로 방송영상제작 사업자와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상의 규정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방송법」 제72조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자이다.<sup>88)</sup> 「방송법」은 일정한 종류의 프로그램 법정비를 편성의무<sup>89)</sup> 또는 편성비율의 상한<sup>90)</sup> 등 방송편성(방송되는 사항의

84) 이상협, “하도급법의 새로운 영역, 용역하도급에 대해”, 『경쟁저널』 제126호, 2006.5.30., 48~49면.

85) 지상파방송사업(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위성방송사업(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86) 「방송법」 제2조

87) 한편,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방송(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8호 및 제9호).

88)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89) 국내방송프로그램(제71조)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제72조), 시청자·청취자 참여프로그램(제69조) 등의 편성의무를 말한다.

90) 특수관계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제72조 제2항) 및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방송사업자에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비율 편성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91)</sup> 즉, 의무편성비율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는 이를 “외주제작사”로 지칭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0호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등(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정의하고 있다. 역무고시 제6호의 방송영상제작 사업자는 「방송법」의 외주제작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방송법」의 외주제작사는 해석상 다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무고시 제6호에서 의도한 바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고하지 않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영상제작 사업자”가 “방송 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무고시 제6호의 방송영상제작 사업자는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편성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 즉 외주제작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제69조 제6항) 등을 말한다.

91) 구체적인 비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사업자·방송영상제작사업자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통칭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영상제작사업자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제작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른 외주제작사로 해석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하도급법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한 규율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의 개선방안

앞선 분석을 기초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관련 개정사항을 역무고시 개정방안과 하도급법 개정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역무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와 제6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종래에 역무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추가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활동.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항제1호의 정보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탁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4의2. 데이터베이스(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의 제작 및 제공·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검색하는 것을 위탁하는 활동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을 위탁하는 활동

가.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

나. 외주제작사(「방송법」 제72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편성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자  
라.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둘째,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경우에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과 역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기초로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sup>92)</sup>

제 2 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⑩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1의2.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활동

1의3. 데이터베이스(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를 제작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검색하는 활동(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제공·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92) 이하에서는 이 절 2. 운수업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에 더하여 누적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번호는 가지번호를 붙여서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영화의 제작

2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의 제작

2의3. 「방송법」 제2조 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2의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제작

2의5. 「공연법」 제2조 제1호의 공연을 위한 기획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활동(「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의 물류사업

5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국제물류주선업

5의3. 「철도사업법」 제2조 제6호의 철도사업

6.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7.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8.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개정 201 . . . >

⑫ 삭제 <201 . . . >

⑬ 삭제 <201 . . . >

##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L)은 “부동산업(68)”과 “임대업;부동산 제외(69)”로 세분된다. 그리고 부동산업(68)은 다시 부동산 임대업(6811)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부동산 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6822)으로 세분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관리활동에는 집세수납, 경비 및 청소활동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나 개별 가구 또는 사업장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2) 하도급법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관련 규정

한편, 하도급법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역무고시 제3호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하도급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관리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역무고시 제3호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임대업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 제2절 “3. 역무고시 제3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하여 역무고시 제3호의 규율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대상을 제안한바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하도급법과 역무고시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이 규율하고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sup>93)</sup>

1.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의 동조 제2호의 분양 업무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의 동조 제5호의 공급 업무
--------------------------------------------------------------------------------------------------------------------------------------

3)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교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이 규율하고 있는 영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sup>94)</sup>

<표 9>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68. 부동산업		

93) 이와 관련하여 제4장 제2절 3.을 통하여 개선방안으로서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94)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과 화물운송 등의 물류서비스업을 포함하므로, 역무고시 제2호 가목은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즉,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역무고시 제2호 가목의 화물운송업에 포함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역무고시 제2호 다목의 물류서비스업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6811. 부동산 임대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역무고시 I.3.  법 §2 ⑬ 제3호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22.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691. 운송장비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4. 무형재산권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을 비교해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6811)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6822)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임대업(69)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관리업을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음에 비하여, 하도급법은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은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 등과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등의 업무’<sup>95)</sup>로 정의하고,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하도급법, 주택법 등은 모두 그 규정하고 있는 바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부동산이란 건물 외에도 교량 및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立木)<sup>96)</sup>은 물론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건축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관리업이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시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또는 입목 등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교량 등 건축물 외의 부동산시설을 포함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주택법」은 주택<sup>97)</sup> 또는 공동주택<sup>98)</sup>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축물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다.

####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

앞선 분석을 기초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관련 개정사항을 역무고시 개정방안과 하도급법 개정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역무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장 제2절 3.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므로 이로서 같음하기로 한다.

###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의 동조 제2호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95) 「주택법」 제2조 제18호

96)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97)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제2조 제1호).

98)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제2호).

3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의 동조 제5호의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둘째,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경우에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과 역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기초로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 2 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1의2.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활동  
1의3. 데이터베이스(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를 제작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검색하는 활동(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제공·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영화의 제작

2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의 제작

- 2의3. 「방송법」 제2조 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2의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제작
  - 2의5. 「공연법」 제2조 제1호의 공연을 위한 기획
  -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활동(「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포함한다)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의 물류사업
  - 5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국제물류주선업
  - 5의3. 「철도사업법」 제2조 제6호의 철도사업
  - 6. 「주택법」 제2조 제18호의 주택임대관리업 및 같은 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 기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2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활동
  - 6의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분양 업무(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분양사업자에 한한다)
  - 6의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공급 업무(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에 한한다)
  - 7.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 8.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개정 201 . . . >
- ⑫ 삭제 <201 . . . >
  - ⑬ 삭제 <201 . . . >

##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은 “연구개발업(70)”과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의 중분류를 가진다.

“연구개발업(70)”은 기초연구(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기초 탐구)와 응용연구(실용적인 특정목적에 위하여 수행되는 기초 탐구), 실험개발(제품 및 공정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및 기타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작업)의 세 가지 유형의 활동이 분류된다.

“전문서비스업(71)”은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는 법무관련 서비스업(711)과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715)의 소분류로 나뉜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은 세분류 단계에서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는데,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7211)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7292)으로 나뉜다.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은 디자인, 사업 및 재산권 중개, 수의서비스, 사진촬영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하도급법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규정

한편, 하도급법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이다. 이때 설계는 제외한다.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으로서 ①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와 ② 이에 대한 사업관리, ③ 견적(見積), ④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⑤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를 말한다.<sup>99)</sup>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두 번째 유형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제2조 제12항 제3호)’이다. 이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로는 하도급법이 명시하고 있는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 외에 미술 저작물(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과 건축 저작물(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진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저작물(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설계 또는 화가 또는 만화가, 디자이너, 사진감독 등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즉 비공연 예술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역무고시 제5호가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①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활동 또는 ②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위탁하는 활동, ③ 전시 및 행사와

9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당해 사업자의 위탁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광고대행사 내지 광고기획사, 광고제작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엔지니어링활동</li> <li>2. (건축)설계</li> <li>3. 비공연 예술활동</li> <li>4. 광고대행<sup>100)</sup> 또는 광고기획, 광고제작<sup>101)</sup> 등의 업무</li> </ol>
-------------------------------------------------------------------------------------------------------------------------------------------------------------------------

### 3)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이 규율하고 있는 영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100)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과 “광고물 작성업(71393)”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의 일종으로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이 절 3.에서 제시한 역무고시 및 하도급법의 개선방안의 내용에 포섭된다.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 회사본부, 지주회 사 및 경영컨설팅 서 비스업	변호사법, 변리사법, 법 무사법, 행정사법, 공인 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방송광고대행 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업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업자)	역무고시 I.5.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 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 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건축사법(설계), 건설산 업기본법(건설용역업) <sup>102)</sup>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 §2 ⑫ 제3호  법 §2 ⑬ 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중에서 “연구개발업(71)”과 “광고업(713) 이외의 전문서비스업(7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설계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즉, 현행 하도급법은 건축설계를 제외하면, 조경공사 등 여타의 건설공사 관련 설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103)</sup>

다음으로 하도급법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설계와 설계 외의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2조 제12항과 같은 조 제1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법이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과 역무의 공급을 구분함에 있어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과 역무의 공급

1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 라. (생략)

5. ~ 15. (생략)

103) 건설공사는 건축공사 외에 조경공사 등을 포함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건설용역업에 해당한다.

의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서는, 엔지니어링 활동을 설계와 설계 외의 것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광고업은 각종 광고매체와 관련된 광고대행사(agency)는 물론 광고판매대행사(media representative), 광고 기획, 광고디자인작성, 광고물배포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광고 관련 사업자에 관한 입법례는 그리 많지 않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방송광고대행사(agency)<sup>104</sup>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media representative)<sup>105</sup>를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업<sup>106</sup>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무고시는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하도급법이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현실에 있어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도급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의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한 것이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은 하도급법의 적용이 필요한 영역을 특정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디자인보호법」 제2조의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보호가 요구되는 업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104)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9호).

105) 광고판매대행사업(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말한다(제2조 제7호·제8호 및 제6호).

106)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조 제3호).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

앞선 분석을 기초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개정사항을 역무고시 개정방안과 하도급법 개정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역무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광고판매대행사업자(media representative)는 광고매체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광고매체(media)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라는 점에서 사업의 특성상 역무고시 제5호 각목의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광고대행사업자(agency)로 명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광고대행사업자(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의 제작, 광고매체의 선택, 광고매체운영자와의 광고계약의 대리 등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활동
-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위탁하는 활동
-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

둘째,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경우에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과 역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기초로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 2 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⑩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1의2.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활동  
1의3. 데이터베이스(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를 제작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검색하는 활동(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제공·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의 제작

2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비디오물의 제작

2의3. 「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2의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제작

2의5. 「공연법」 제2조제1호의 공연을 위한 기획

3. 「산업디자인보호법」 제2조의 산업디자인의 개발 및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작성활동

3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의 건설용역업(설계에 한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

4의2. 광고대행사업자(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의 제작, 광고매체의 선택, 광고매체 운영자와의 광고계약의 대리 등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물류사업

5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국제물류주선업

5의3. 「철도사업법」 제2조제6호의 철도사업

6. 「주택법」 제2조제18호의 주택임대관리업 및 같은 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 기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활동

6의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분양 업무(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에 한한다)

6의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급 업무(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에 한한다)

7.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8.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개정 201 . . . >

⑫ 삭제 <201 . . . >

⑬ 삭제 <201 . . . >

##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과 “사업지원 서비스업(75)”로 세분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의 소분류로 나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75)”는 세분류 단계에서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는데, 고용알선업(7511)과 인력공급업(7512), 여행사업(7521),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으로 나뉜다.

### 2) 하도급법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규정

하도급법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제2조 제13항 제4호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역무고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표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무
  - 가. 시설경비업무
  - 나. 호송경비업무

- 다. 신변보호업무
- 라. 기계경비업무
- 마. 특수경비업무

3)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이 규율하고 있는 영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1. 고용알선업	직업안정법	
7512. 인력공급업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521. 여행사업	관광진흥법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관광진흥법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법률	하도급법
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경비업법	법 §2 ⑬ 제4호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경비업법	법 §2 ⑬ 제4호
7533.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률, 하도급법을 비교해보면,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을 제외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은 대부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은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귀중품을 운송서비스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경비업무<sup>107)</sup> 및 호송경비업무<sup>108)</sup>, 신변보호업무<sup>109)</sup>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은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보안경보시스템의 원격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

107) 경비대상시설(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108)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109)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동을 말한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무<sup>110)</sup>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하도급법 제2조 제13호 제4호의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을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다섯 가지 유형의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 및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sup>111)</sup>)를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

앞선 분석과 용역과 역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기초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개정사항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 제 2 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⑩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110)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111)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1의2.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활동
- 1의3. 데이터베이스(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를 제작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검색하는 활동(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제공·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의 제작
  - 2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비디오물의 제작
  - 2의3. 「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2의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제작
  - 2의5. 「공연법」 제2조제1호의 공연을 위한 기획
- 3. 「산업디자인보호법」 제2조의 산업디자인의 개발 및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작성활동
  - 3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의 건설용역업(설계에 한한다)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
  - 4의2. 광고대행사업자(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의 제작, 광고매체의 선택, 광고매체운영

- 자와의 광고계약의 대리 등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물류사업
  - 5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국제물류주선업
  - 5의3. 「철도사업법」 제2조제6호의 철도사업
  6. 「주택법」 제2조제18호의 주택임대관리업 및 같은 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 기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활동
  - 6의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분양 업무(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에 한한다)
  - 6의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급 업무(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에 한한다)
  7.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
  8.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개정 201 . . . >
- ⑫ 삭제 <201 . . . >
- ⑬ 삭제 <201 . . . >

## 제 4 절 소 결

지금까지 분석한 하도급법의 유관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무고시만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안을 제시한다.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2. 운송사업자(「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및 운송주선사업자(「상법」 제114조의 물건운송 주선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업으로 행하는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가 같은 조 제2호의 분양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5호의 공급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활동.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항제1호의 정보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탁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6. 데이터베이스(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의 제작 및 제공·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검색하는 것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7. 광고대행사(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의 제작, 광고매체의 선택, 광고매체운영자와의 광고계약의 대리 등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활동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위탁하는 활동

-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을 위탁하는 활동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
- 나. 외주제작사(「방송법」 제72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편성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라.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9.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둘째, 용역과 역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기초로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안을 제시한다.

제 2 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2.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

-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생산활동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활동
- 3. 데이터베이스(일정량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를 제작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검색하는 활동(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제공·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의 제작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비디오물의 제작
- 6. 「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제작
- 8. 「공연법」 제2조제1호의 공연을 위한 기획
- 9. 「산업디자인보호법」 제2조의 산업디자인의 개발 및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작성활동
- 10.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의 건설용역업(설계에 한한다)
-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
- 12. 광고대행사업자(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의 제작, 광고매체의 선택, 광고매체운영자와의 광고계약의 대리 등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1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물류사업

14.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국제물류주선업
  15. 「철도사업법」 제2조제6호의 철도사업
  16. 「주택법」 제2조제18호의 주택임대관리업 및 같은 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 기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활동
  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분양 업무(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분양사업자에 한한다)
  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급 업무(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에 한한다)
  19.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
  20.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개정 201 . . . >
- ⑫ 삭제 <201 . . . >
- ⑬ 삭제 <201 . . . >

## 제 5 장 결 론

국민 경제적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하도급 형태의 수직적·계층적 분업구조의 위탁거래가 증가하는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의 개선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용역 또는 역무 분야의 적용범위를 개선하는 것은 서비스분야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특정 사업자 또는 산업군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출발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많은 강행법규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형사벌 내지 행정벌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변이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2장부터 제4장에서 용역 또는 역무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용역분야의 수급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용역위탁”의 범위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과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의 확대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민법과 하도급법이 하도급·도급과 하도급거래를 다루고 있는 방식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그 예외를 분석하였다. 하도급법은 수급인의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이 하수급인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함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지배하여 하수급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 유형 또는 거래유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하며, 경제현실에 있어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도급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의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하여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해석에 의한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고, 정책적 목적 하에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입법작용을 통하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입법을 통하여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역무위탁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화한 포괄주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확대 또는 개편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을 조사하였다. 현행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 역무 또는 서비스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용역, 역무 또는 서비스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64개 법률을 대상으로 그 정의 및 범위, 주요 관련 제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입법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특별한 시사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용역과 역무 그리고 서비스가 법적 개념으로서 상하관계 또는 포섭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하도급법에서 굳이 구분하여 다룰 법률상의 실익도 없다는 점에서 용역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통합적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두 가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와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산업과 관련된 법령 간에 정합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하도급법은 큰 흠결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역무고시는 2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폐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준거법령을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규의 적용대상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당사자를 부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유관법령과의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 제고방안 등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분류명과 개별 법령 그리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역무 간의 범위 불일치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대상은 “역무”의 범위의 개선이라는 연구의 목적범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① 포괄적으로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군과 ② 대분류 수준에서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거나 관련성이 낮은 산업군, ③ 현행 하도급법의 체계에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한 산업군은 제외되었다. 그 결과 분석대상은 대분류 수준에서 ① 운수업과 ②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③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④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었다. 이들 범주 내에 속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 관련법률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분석하여 각 범주별로 법 적용상의 문제점 또는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의 개선안은 유관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안으로서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료로서의 실용적 활용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들 개선안이 하도급 규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김관보 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4. 9.
- 김기우·김규완,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0.
-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 이상협, “하도급법의 새로운 영역, 용역하도급에 대해”, 「경쟁저널」 제 126호, 2006.5.30.
- 이원탁, 한국철도공사법안(이호웅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3.6.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다61435, 판결.